

## 6. 住宅建設基準等に 關한 規定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58호 1993. 4. 23

### 1. 개정이유

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구매시설·유치원등 일부복리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에 따라 일정규모(세대당 0.3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규모)의 구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단지실정에 따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함.
- 나.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안에 세대수

에 따라 일정규모(세대당 0.6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규모)이상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므로써, 사업주체가 단지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: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